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 [国際福音キリスト教団]) 은 민족 감정에 호소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변 선교사가 일본에서 일으킨 사건에 관한 크리스천투데이일본기사(*)에 대한 원고 측반론

- (*) http://jpct.chtoday.co.kr/view.html?cat=rs&id=11056
- (이하 회색 하이라이트 부분은 해당기사 인용을 나타냄)
- ◆ 「한 달을 앞두고 판사 전원이 갑자기 교체됐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는 「◆1 심 판결 앞두고, 5 년간 심리해 온 판사 3 명 전원 갑작교체」 「한 예로 민사 1 심 재판은 진행 도중에 판결을 코 앞에 두고 재판관이 갑자기 변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5 년간 심리해 온 판사 3 명이 판결까지 한 달을 앞두고 모두 교체된 것이다」 「변 목사의 심리를 맡아 온 판사 3 명이 모두교체됐다. 결국 사건을 맡은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판사들이 지난 5 년 간의 심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다.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정기적으로 이동하는(교체되는) 일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두 교체되는 일은 없고, 사건 심리의 계속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 제 1 심 판결을 내린 판사 3 명 중 재판장은 판결 1 년 2 개월 전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 변재창에 대한 2 번의 심문을 포함한 당사자 심문 및 증인 심문 등의 주요한 부분을 직접 지휘했다. 다른 2 명의 판사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판결을 내리기 한 달 전에 판사 3

명이 모두 교체되었다는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며, 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다. 이는 조사하면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크리스천투데이의 「이런 일은 2 심 고등법원 재판 중에서도 있었다. 여자 판사 1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체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판결을 내린 고등 법원 제2심 판사 중 한 명인 여성 판사가 재판 도중에 교체된 사실은 없다. 해당 여성 판사는 다른 2명의 판사와 함께 끝까지 제2심 심의를 담당하였고 판결서도 작성하였다. 판결 선고일이 되어 이 여성 판사가 전보(轉補)로 인해 출정하지 못하여 다른 판사가 대신했을 뿐이다. 이는 고등 법원 제2심 판결서를 읽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의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 「국가적인 편견과 차별이 담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선동

크리스천투데이는 (가공의) 판사 교체를 예로 들면서, 「민사재판의 경우 변목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물보다는 원고 측의 피해 주장에 무게를 더실어주고 있어,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편견과 차별이 담긴 판결이라는 항의도 나오고 있다」 「변목사는 이에 대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기국민 편에 선 이번 판결은 완전한 편견이고 차별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완전한 증거를 제출했고, 그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증명이 됐는데, (오히려 민사 재판부가) 빌빌 돌려서 다른 날 일 수 있다고 하면서모든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비겁한 차별이다"라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 양 국민 간에 무익한 갈등을 만들어 내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만을 읽으면 격앙되어 피고 변재창을 동정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해야 할 변재창 선교사와 피고 교단이 반대로 크리스천투데이를 이용하여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주장을 유포하고, 그 결과로 한국 국민 감정을 악화시켜 자신들의 부정을 은폐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변재창 선교사와 피고 교단의 언동은 교활하고 매우 위험하다.

애당초 민사재판 제 1 심에서는 당사자 및 관계자의 증언과 기타 증거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판결이 내려졌다. 제 2 심(항소심)에서의 항소인들(제 1 심 피고 변재창 및 피고 교단)의 주장은 제 1 심 판결이 이미 심의한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민사재판 제 2 심 판결은 새롭게 제출된 서증을 포함하여 재차 수많은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피고 변재창은 1 심 피고교단의 담임목사이자 최고위 영적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도하고, 제 1 심 원고 (참고: 성희롱 피해자 4 명 모두)가 피고 변재창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심리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 각 성희롱 행위에 이르렀다"며 제 1 심 판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판시를 함으로써 변재창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민사재판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공개문서(한국어)를 참조 바람. 「피고 변재창이 성희롱 불법행위를 범한 것은 명백」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 공개문서에 대한 반론) →

http://www.mordecai.jp/comment20150912_kr.html

◆ 「형사와 민사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 — 민사에서 변 선교사의 알리바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크리스천투데이는 「◈같은 사건인데... 형사는 무죄!, 민사는 유죄! 어떻게 이런일이」 「보다 큰 문제는 변 목사 측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전부 제출하고, 대부분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선, 형사와 민사는 동일하게 변 선교사가 일본에서 일으킨 사건을 재판한 것이지만,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재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 원고 중 한 명에 대한 준강간 사건(간음 피해) 1 건만이 검사에 의해 입건되어 법정에서 심의되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 원고 4 명에 대한 그 외 성희롱 피해는 전혀 심의되지 않았고, 판결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판사가 준강간 사건 이외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애초에 그 사건들은 형사재판의 심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간음 피해가 발생한 일시(日時)에 대한 피고인 변재창의 알리바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무죄가 된 것이고, '사실관계가 분명히 증명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4명의 피해자(원고)가 호소한 모든 성희롱 피해가 심의대상이 되었다. 민사재판 소장에 기재된 피해 건수가 (형사재판에서 심의된 간음 피해를 제외하고) 총 70건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민사 판결서의 '피해사실 일람표'를 확인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다.

민사재판 법정에서 변 목사와 피고 교단은 특정 일시(日時)에 대한 변 목사의 각 알리바이를 증명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민사 제 1 심 판결은 비서 수첩 등을 근거로 한 변재창의 알리바이 주장 그 자체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또한 사안의 성질 상 피해일시의 특정이 애매해지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면서 '변재창 측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이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

크리스천투데이는 「교회 측은 성명에서 "형사재판에서도 모든 진술이 그 날이아니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조차도 다른 날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지 못한 사건이다. 분명한 거짓 진술로 판명이 나서 항소도 하지 못하고 1심에서 성추행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무고무죄 판결로 끝났는데, 어떻게 민사재판은 이 모든 것을 교묘히 무시하고 자칭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사 판결은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의했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민사재판은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엉터리가 결코 아니다. 처음부터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시작된 본 민사재판은, 밀실에서 성희롱 행위가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행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그것은 전부 허구이고 배후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고 우기는 피고 변재창들의 주장 중, 과연 어느 쪽이 거짓인지, 어느 쪽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서류와 양측의 법정 진술(심문)을 바탕으로 면밀히 조사함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여성 신도와 밀실에서 단둘이 된 적은 전혀 없다. 자신은 이 건에 관하여 완전히 결백하다"는 변 선교사 주장의 신빙성는 수많은 증거에 의해 부정되었다.

변 선교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예로 변 선교사 측이 민사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중 하나인 변 선교사 부인의 진술서로도 입증된다. 변 선교사 부인은 "비서 X 씨가 목사실에서 마사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남편 변재창에게 이후로는 목사실에서 마사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남편 변재창이 여성과 단둘이 방에 있는 것 자체가 아내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X 씨의 2007년도 수첩 중 2월 15일 'To Do' 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 선교사가 여성과 단둘이서 목사실에 있었고, 그 여성에게 마사지를 시킨 사실을 변 선교사 부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 1 심 판결은 "더욱이 피고 변재창이 여성 신도와 단둘이 되는 상황 따위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고 변재창이 X 에게 단둘이 있을 때 마사지를 받은 사실과 그 외의 사실(생략)에 비추어봐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피고 변재창의 진술은 신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단은 제 2 심 판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민사 판결이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로 터무니없는 부당한 판결'이 아닌 것은 제 1 심 및 제 2 심 판결서를 읽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 「원고는 정신질환으로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자. 성적, 도덕적으로도 방종하여신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 침해

크리스천투데이는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 코노 총무는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피해자 중에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전에도 성적인 이런 관계가 있었고,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그것을 끊지 못했다"며 "변목사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가까이 하려 했던 자,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는자, 정신질환으로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자, 다른 교회에서도이성문제로 쫓겨난 자 등 처음부터 신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또피해자 B의 경우 결혼 전에 남자와 동거를 했고,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그런문제가 지속됐다고 했다. "이전에도 결혼하려다가, 상대방과 결혼하기 싫으면성추행 문제로 뒤집어 씌운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 A의 경우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수업에 오지 못할 때의 이유가남자의 집에 있어서였다. 신학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 등으로 피고 교단 코노 총무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민사재판 원고가 과연 그런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째서 크리스천투데이는 원고 측을 취재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피고 교단 말만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인가. 직접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고 교단의 비방만을 그대로 보도하는 크리스천투데이의 자세는 큰 문제이다.

◆ 「피해자들에게 점점 교회를 치자고 선동하는 그들의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는 「◈교회 공격하는 MK 그룹, W 그룹 등 배후 세력과 피해자들 상담 증거도」 「소목자출판 요시다 대표는 "원래는 MK 그룹의 경우 통일교나 여호와의증인 등의 탈퇴자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피해자와 교회, 피해자와 목사 사이에서 중개료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점점 교회를 치자고 선동하는 그들의 방식은 동일하다. 보도를 먼저 내고 숫자를 모으고 재판을 거는 패턴"이라고 밝혔다」는 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소목자출판 요시다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MK 그룹, W 그룹 등이 배후의 그룹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변 목사의 실각을 노리고 허위 성희롱 피해를 날조했다"며 원고와 배후 그룹의 공모에 의한 '음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은 민사재판 법정에서 이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이러한 꾸며낸 이야기에 대하여 법원은 일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변 선교사와 피고 교단이 주장하는 '음모'가 도무지 법정에서 사실 인정 여부를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허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

(「모르드개의 모임」대표 가토 고이치(加藤光一))